

(붙임 5)

종량제봉투 판매소 준수사항

(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, 제25조)

제24조(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)

① 봉투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
2.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준수
3.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
4.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보고
5. 종량제봉투 대금 기간 내 납부
6. 종량제봉투의 교환 및 현금교환(날장 교환)
7. 기타 행정 지시사항

※ 날장 판매 : 5ℓ ~ 30ℓ 는 20매, 50ℓ ~ 100ℓ 는 10매씩 포장되어 있으나 민원인이 요구 시 날장이라도 판매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5조(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)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의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2015년 1월

성 동 구 청 장